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도서관), 02-970-9031

- 제정 1984. 6. 27.
- 개정 1991. 12. 10.
- 개정 1997. 4. 01.
- 개정 2000. 3. 21.
- 개정 2004. 8. 23.
- 개정 2005. 10. 01.
- 개정 2010. 8.30.
- 전부개정 2011. 5. 26.
- 전부개정 2017. 2. 8.
- 일부개정 2018. 6. 18.
- 일부개정 2020. 2. 6.
- 일부개정 2021. 8. 4.
- 일부개정 2021. 10. 1.
- 일부개정 2022. 3. 1.
- 일부개정 2022. 12. 1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제6조제2항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직무)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(이하 "도서관" 이라 한다)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

- 를 수행한다.
- 1.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· 정리 및 보존
- 2. 교육, 연구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- 3.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, 디지털화 및 관리
- 4.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
- 5. 그 밖에 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- ② 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하거나,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- 제3조(조직) ①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도서관에는 학술정보지원팀, 학술정보운영팀, 학술연구지원팀을 두며,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22. 12. 1.)
- 제4조(발전계획의 수립) 관장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"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"에 기초하여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2장 위원회

- 제5조(운영위원회) 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 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,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위원장이 도서관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- 제7조(운영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도서관 규정에 관한 사항
 - 3. 도서관 자료의 이관,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8조(운영위원회 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(전문위원회) ① 관장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

- 제10조(자료의 수집과 구입예산 등) ① 도서관은 대학의 학술 연구와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 도서관에 소장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. 단행본
 - 2. 참고자료
 - 3. 연속간행물
 - 4. 비도서자료
 - 5. 전자자료
 - 6. 그 밖의 자료
- 제11조(자료 선정)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.
 - 1. 교수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
 - 2.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

- 3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제12조(자료 등록) ① 구입한 자료는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수증자료는 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록할 수 있다.
- 제13조(자료 폐기 및 제적) 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이용가치의 상실
 - 2. 훼손, 파손 또는 오손
 - 3. 불가항력적인 재해, 사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
 - 4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
 -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하로 하되, 해당 연도에 등록된 도서관 자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

- 제14조(개관시간)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관장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- 1. 일반열람실 : 06:00~24:00
 - 2. 동양서자료실, 참고자료실, 멀티미디어실: 09:00~21:00 (방학중 09:00~18:00)
- 제15조(휴관일)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
 - 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
 - 3. 개교기념일
 - 4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
- 제16조(이용자격) 도서관의 이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교직원
 - 2. 재학생
 - 3.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
- 제17조(열람 및 대출) ①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

증(학생증, 공무원증, 교직원증) 및 도서관 회원증을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② 대출 권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할수 있다.
- 1. 전임교원 : 40권 90일
- 2. 직원, 조교 : 10권 30일
- 3. 비전임교원 : 20권 30일
- 4. 대학원 재학생 : 20권 30일
- 5. 대학 재학생 : 10권 14일
- 6.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: 관장이 별도로 정함
- 제18조(대출 불가 자료 및 제한) ① 대출이 불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.
 - 1. 참고자료
 - 2. 연속간행물
 - 3. 비도서자료
 - 4. 그 밖에 관장이 지정하는 자료
 - ② 관장은 졸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졸업예정자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9조(대출 자료의 반납) ① 대출한 자료는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하며, 관장은 필요한 경우 대출기가 중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대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 야 한다.
- 1. 교직원 : 퇴직, 휴직, 전출
- 2. 재학생 : 졸업, 제적, 휴학
- 3.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: 관장이 반납을 요구할 경우
- 제20조(자료의 복사 및 촬영) ① 도서관 자료는 교육연구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사 및 촬영을 할 수 있다. 다만, 복사 및 촬영으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사 및 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② 자료의 복사 및 촬영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,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.
- 제21조(자료의 배상) ① 이용자가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료실에 신고하고,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가 동일한 자료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물 배상하여야 한다.
 - ② 이용자는 자료의 복사 및 촬영으로 인하여 원형이 변형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.
- 제22조(이용 수칙) 도서관 이용자는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1. 자료의 무단반출 및 시설물의 훼손
 - 2. 신분증 및 도서관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
 - 3.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
 - 4.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행위

제5장 제재

- 제23조(연체자 제재) ① 이용자가 대출한 자료를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대출을 정지한다.
 - ② 대출한 자료를 기한을 넘겨 반납할 때는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.
 - ③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경우 도서관 출입 및 교내 제 증명 발급을 제한하다.
- 제24조(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) 이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배상 요구 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

제25조(직원의 배치 및 교육)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

따라 학생 수, 장서수,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·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·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도서관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 관련 교육·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대학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·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③ 직무관련 교육·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
 - 2.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, 발표회, 신기술 교육, 학술회의, 견학, 외부기관 위탁교육, 해외 연수 등

제7장 보칙

제26조(그 밖의 사항)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8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31호, 2010. 8. 30)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73호, 2011. 5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360호, 2017. 2. 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규정 시행세칙」은 폐지한다.

부 칙(제513호, 2020. 2. 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26호, 2021. 8. 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40호, 2021. 10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70호, 2022. 3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723호, 2022. 12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